

#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제116의 요약

-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증빙서류를 작성하고 타인으로부터 받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되는 날)이 경과한 날부터 만 5년간 보관하여야 함(즉, 최장 6년 3개월 내지 최단 5년 3개월을 보관해야 함). 단, 5년 초과하여 이월공제시 결손금을 공제받은 사업연도 신고일 이후 1년간 보관하여야 함.
- 세법상 사업자(법인세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로부터 재화·용역공급받고 대가지급시 지출증빙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함 : 인정되는 투명지출증빙서류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신용카드월별이용대금명세서⊕ ERP신용카드·직불카드 거래정보 임.
- 투명증빙서류제출 불필요한 경우 : 공급받은 금액 건당 3만원(2009년은 1만원), 경조사비는 20만원 이하,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받은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에게서 용역공급받은 경우 등,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불가피한 경우, 의미적은 경우 등)

## ●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 I. 거래관련 증빙서류 작성·수취분의 5년보관

(법 제116조제1항)

### 1. 증빙서류작성·수취보관의무

법인은 각 사업연도마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의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타인이 작성교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데, 작성분과 수취분 증빙서류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본 법 제60조 규정임)인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는 99년 1월 1일부터의 재화·용역공급거래에 대해 전면 적용된다. 예를 들어 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다음 연도 01년 3월 31일이 되므로 그로부터 5년인 06년 3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00년 1월 1일 거래사항은 만 6년 3개월인 06년 3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는 뜻이 된다. 다만, 각 사업연도 개시일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서류를 공제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 관련증빙 5년간 작성·수취보관의무 이유

법인의 거래관련증빙은 장부와 함께 납세소득계산의 가장 중요한 근거서류인바, 본 법 제112조에 장부비치·기장의무를 규정하는 것에 추가하여 본 조

는 거래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266조는 “회사장부·영업·청산관련 중요서류는 본점 소재지에서 청산종결 등기를 한 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회사가 없어지고도 10년간 보존되도록 영구보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 제266조는 단서로서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래관련증빙에 해당하는 본 법의 규정은 상법의 5년 보존의무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제3호는 “대부분의 자진 신고 조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을 제척기간으로 규정하여 5년기간 만료후에는 국세납부할 것이 발견되어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조의 5년 보존규정은 상법 및 국세기본법의 거래관련 증빙보존 및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 규정과 같은 맥락을 갖는 규정이다.

### 3. 증빙보존 의무불이행의 불이익

거래관련증빙이 비치기장 및 보존되지 않으면 상법규정 위배로 과태료에 해당된다. 세법상으로는 가산세 등 직접적 불이익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증빙불비·부실 등의 사유로 해당비용·지출이 손금불산입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 법 제66조제3항단서 및 시행령 제104조 규정에 의거 “소득금액계산 관련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 미비·허위” 등으로 추계결정·경정 사유가 될 수 있다.

## II. 사업자거래분의 투명증빙서류수취·보관의무

(법 제116조제2항·제3항)

### 1. 투명증빙서류의 수취·보관의무와 범위

#### ①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용역만 해당

공급대가를 지급하면서 투명증빙서류를 받고, 보관하여야 하는 거래는 외부

사업자로부터의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거래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만이다. 외부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서 외부의 공급자가 사업자가 아닌 일반비사업개인의 일시적·우발적 거래, 국가 등·외국인·외국법인 등의 경우에는 거래대가를 지급하더라도 본 법상의 투명증빙을 수취·보관할 의무는 없다. 즉, 비사업자로부터의 거래가 있었다면 거래관련 사실과 금액을 타당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상대방거래확인서, 주민등록표사본, 거래대가영수증 등이면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으로부터 부실거래·증빙불비거래 등의 의심을 받게 되어 손금불산입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투명증빙이 입수되는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현명하다.

## ② 법인·개인사업자·소득세법상 사업자 등

다음 시행령은 재화·용역거래에서 투명증빙을 받아야 할 외부사업자로 법인(법인세법상 계산서작성의무 있음)·소득세법상 사업자(계산서작성의무 있음)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세금계산서나 영수증작성의무있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사업 관련부분은 제출해야 한다.

### 관련법령

#### ●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동법 제119조제3호·제5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③ 투명증빙이 원천적으로 불필요 · 불가능한 거래상대방

상기 시행령에 의거 외부사업자와의 거래인 경우도 투명증빙이 원천적으로 불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수익사업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세금계산서 교부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법인격 있으나 세금계산서 등 교부하지 않고, 과세거래가 아닌 경우도 많음)
- 금융 · 보험업 영위법인(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이며, 관련 입금증 · 영수증 · 통보서 등으로 투명입증됨)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외환거래로 투명입증되며 국내법 적용되지 않으므로)
- 읍 · 면지역의 간이과세자로 신용카드가맹점 아닌 사업자(낙후지역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현실인정)
-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개인(외환거래로 투명입증되며 국내법 적용되지 않으므로)

## 2. 투명증빙의 범위와 종류 및 불이행가산세

① 신용카드전표 ·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투명지출증빙으로 인정되려면, 외부의 재화용역공급사업자의 매출 · 수입 · 이익 · 소득이 과세자료로 양성화되어 부가가치세 · 소득세 · 법인세 등이 제대로 과세되는 경우이어야 하는바, 거래쌍방간의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이나 매출 · 매입계산서합계표의 세무서 제출 등으로 국세전산망 등으로 집계 · 대조 · 상호검증되거나 거래대금의 예금통장입금 등의 금융자료로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본 조 규정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계산서(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만 해당함), 매

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투명지출증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 시행령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뿐 아니라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선불카드도 투명증빙으로 포함규정하고 있는바, 이런 경우도 관련 거래대금이 은행을 통하고 과세자료가 노출되기 때문에 인정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거래정보도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보아 투명증빙자료로 인정한다.

### 관련법령

#### ①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③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003. 12. 30 개정)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 ② 적격 투명증빙 미수취·보관불이행금액×2% 가산세 부과

본 법 제76조제5항은 외부사업자와의 거래시 투명지출증빙입수의무가 있는 경우인데도 미수취하거나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 수취하지 않은 금액(총 거래금액을 말함.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 거래대기)×2%를 법인세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총 거래금액×2%의 가산세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 즉 지출자·구입자에게 부과하는 이유는 투명증빙이 없으면 공급자·매출자·수입받아가는 자의 매출액이 노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매출액×10%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과 개인법인사업자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도 탈루되거나 은닉될 수 있기 때문에 매출누락자의 과세원천을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지출자·구입자·공급받는 자가 공급자

대신으로 세액의 일부를 납부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2000년까지는 10%이었으나 2001년부터는 2%로 인하됨).

그러니까 2000년부터는 지출금액에 일정비율(2000년에는 10%, 2001년부터는 2%)의 가산세 부담이 싫으면 투명증빙을 작성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라는 뜻이고, 투명증빙이 없는 자와 거래하였다면 현실적으로 지출액·물건값의 일정비율(10% 내외)을 싸게 샀을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비율을 내라는 뜻이다. 그러나 2001년부터는 각종 계산서 등의 미교부·불성실가산세가 1~2%인 점을 감안하여 2001년부터는 2%로 가산세를 인하하였다.

2%의 가산세납부에 있어서 법인세신고납부시 가산세를 자진납부하는 개념은 아니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하는 개념이다.

본 법 제76조가 가산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실무상으로는 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지출증빙 없는 거래에 대해 2%의 가산세를 자진신고납부한다. 이밖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제4항은 법 제25조제2항으로 투명증빙없이 접대비에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손금불산입된 금액으로 인해 원천적으로 손금불산입액×24%의 법인세를 추가부담했을 것이므로 법 제76조제5항의 2% 가산세 규정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즉, 투명증빙없어 1만원 초과 접대비에 대해 손금불산입되었다면 그것으로 종결되며, 투명증빙없는 거래는 건당 3만원, 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 지출액×2%의 가산세는 접대비가 아닌 일반지출거래에만 적용됨].

### ③ 투명증빙미추취·보관안한 경우의 기타 문제

투명증빙의무가 있는 지출거래에 대해 투명증빙없어도 거래사실만 타당하다면 손금산입·원가·비용처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단, 지출액×2%의 가산세만 추가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가산세 부담말고도 원천적으로 투명증빙이 없다면 업무무관지출이나 부실지출로 의심받아 비용불인정 등 손금불산입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 Ⅲ. 적격 투명지출증빙서류 입수·보관의무 예외적용

(법 제116조제2항단서 및 제4항)

#### 1. 중요성 및 연실여건상 투명증빙 예외

##### ① 거래건당 3만원 이하의 재화·용역거래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

외부사업자와의 지출거래라 하여도 재화용역거래건당 3만원, 경조사비는 20만원 이하(부가가치세 대가포함 총액), 농어민에게서 직접 공급받는 거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공급받는 경우 등은 투명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하지 않아도 세무상 불이익을 적용받지 않는다.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관련법령

##### ①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009. 2. 4 개정)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2006. 2. 9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005. 2. 19 신설)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8. 2. 29 개정)

##### ② 3만원 이하(3만원까지)인 경우만 예외

재화·용역 공급받는 거래건당 가액이 1만원, 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이면 당연히 투명증빙 입수해야 불이익이 없는데, 건당 3만원 초과 지출금액이라 하면 총액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된다. 즉, 3만원까지는 문제없는 개념이 아니고 해



당거래금액 전체에 대해 2% 가산세의 불이익이 적용된다. 그러나 거래건당 3만원 이하이면 투명증빙수취·보관이 예외적용되는데, 거래건당 3만원 이하 거래에 대해서는 투명지출증빙 아닌 영수증·금전등록기계산서 등이 입수되어도 무방하다. 따라서 투명증빙입수에 불가피한 문제가 있다면 거래건당 3만원 이하으로 여러 건으로 분산·거래되도록 거래사실이 정리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거래건은 한건인데 영수증만 3만원 이하으로 여러 건으로 분산하였더라도 거래가 실질적으로 한건이라면 통합하여 3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같은 날짜에 같은 항목, 같은 거래처가 여러 개라면 일부러 분산시킨 것으로 보므로 결국 합산하여 3만원 초과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금액을 쪼개서 가산세를 적용함).

### ③ 개인농어민에게서 직접 공급받은 재화·용역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개인에게서 재화·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거래건당 금액이 3만원 초과이라도 투명증빙입수·보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비사업자인 경우도 많고 사업자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영세하며, 기본적으로는 농어민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작성·교부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10%의 탈루문제가 발생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업·어업·임업의 법인은 제외된다. 법인은 면세거래인 경우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이면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데 법인은 거래규모도 크고 법인세법상 과세자료양성화를 위해 계산서 등 투명증빙을 교부하도록 의무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법인과 거래한 사업자는 투명증빙을 입수하여야 한다.

## 2.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자의 경우

### ①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자에게서 용역공급받는 경우 투명증빙제외

용역제공시 원천징수된 거래인 경우 원천징수절차로 소득자료가 양성화되며, 거래규모와 총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파악되므로 투명지출증빙입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원천징수된 모든 거래가 투명증빙예외 적용되는 것은 아

니고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자의 경우만 투명증빙이 예외 적용된다. 물론 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규정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 금액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제1항규정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항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 ② 의료업·보건업 등

상기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은 다음과 같다.

- 의료보건용역(수의사용역 포함)과 혈액(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 관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 관련법령

####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 용역은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가. 쌍꺼풀수술

나. 코성형수술

다. 유방확대·축소술

라. 지방흡입술

마. 주름살제거술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2003. 12. 30 개정)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축산물위생관

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 (2010. 12. 30 단서신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2008. 5. 26 개정)
- 7의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관련 용역 (2008. 5. 26 개정)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이송용역 (2000. 12. 29 신설)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2007. 9. 27 개정)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2010. 12. 29 개정)
1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2007. 12. 28 개정)
12.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2008. 2. 22 신설)
14.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2009. 2. 4 신설)

### ③ 순수개인서비스업 성격 사업(개인자유업)

- 저술가·작곡가 등의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3호) → 관련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은 제35조임.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2008. 2. 29 개정)
    -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77. 6. 29 개정)
    -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77. 6. 29 개정)
    - (다)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 (라)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 (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91. 12. 31 개정)
    -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77. 6. 29 개정)
    -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카)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타)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04. 12. 31 개정)
    -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4. 12. 31 개정)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5. 12. 30 개정)
    -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번호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2008. 2. 29 개정)
    - (나)·(다) 삭 제 (98. 12. 31)
    - (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8. 2. 29 개정)
    -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2008. 2. 29 개정)
    - (바) 삭 제 (2003. 12. 30)
    - (사)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용역 (2007. 10. 15 개정)
    - (아)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2010. 12. 30 단서삭제)

상기 시행령 규정에서 제1호바목(접대부·댄서 등 용역)은 제외함. 즉, 투명 지출증빙입수·보관대상인데, 이러한 용역은 대부분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에 대가가 추가·부가되므로 설사 원천징수대상소득이라 하여도 투명 지출증빙입수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입수·보관의무대상이 된다.

④ 투명지출증빙예외 적용되면서 사업소득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경우

상기 시행령에서 개인의 저술·연예·건축감독·음악·직업운동·보험모 집·판매실적수당 등, 저작사용료 등·강연료·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시스템분석컨설팅 등의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인데, 개인·법인의 독립자 격 용역공급이라도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사업소득원천징 수로 납세절차가 이루어진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득지급받을 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원천징수된 후 나중에 종합소득신고납부한다. 이 렇게 사업소득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지급자가 지급명세서 혹은 원 천징수영수증을 작성·교부하고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바 용역공급자로부터 투명지출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입수·보관할 필요가 없다.

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와 제35조에 열거되지 않은 용역에 대한 투명증빙문제

본 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제3호에 의거 열거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영수증이 작성되고 원천징수된 것에 한하여 투명증빙 입수보관의무가 면제된다. 열거된 용역만 해당되는데,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와 제35조에 열거된 용 역소득만이 해당된다.

시행령에 열거된 용역소득이 아니면 투명증빙대신에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 체될 수 없고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투명 증빙이 입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문자유직업자의 경우는 99년부터 부가 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와 제35조 열거규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용 역대거나 자유업무보수, 소득지급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고 이들 전문자유직 업사업자가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면세거래를 열거 규정한 것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계산서 작성교부대상이 되는 것인바, 과세자료의 양성화 및 어느 정도의 조기과세를 위해서 사업자인 경우도 3%(주민세 포함 3.3%)의 원천징수납부를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99년부터 면허증직업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에서 일괄 삭제되었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3%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들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혹은 영수증만을 교부해야 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전문면허증 직업자에게 전문면허사업관련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는 필히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제출받아야 하며, 상대방이 일반사업자가 아니고 간이과세자 등이어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받은 경우 2000년부터는 용역대가 지급자입장에서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⑥ 개인사업자등록한 경우와 법인에 소속된 경우의 전문면허직업자 거래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영리목적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면허증직업자가 타인에게 업무관련 자문료·고문료 등 인적용역대가를 받는 경우는 99년부터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간이과세자 정도의 수준이라면 영수증을 교부한다(영수증 교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지출자 상대방이 2000년까지는 10%(2001년부터 2%) 가산세불이익 있음).

전문용역사업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자기사업장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달리 동일한 업무관련 자문료 등인데 법인에 소속된 전문직업인으로서 법인이름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자격으로 자문·고문 및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는 법인관련업무가 아니므로 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줄 수는 없고 직접 개인귀속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실무상 문제점이 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에서 전문면허증 직업이 면세대상에서 삭제되었고, 또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도 열거되지 않고 있는데, 결국은 법인소속전문직업인이라도 자기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된다(이에 대해서는 해당법에서

소속법인 아닌 별도의 개인사무소등록인 경우 이중사무소 겸업금지위반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무면허사업의 문제가 있음).

이는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입법 미비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법인세법 제158조제2항제3호 적용에 의거 원천징수가 되기만 하면 별문제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물론 사업자등록을 안해서 부가가치세 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는 별론이다. 극단적으로 인적용역료·고문료를 계속받는 경우라면 사업행위이니 과세되지만, 일시적·우발적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정도의 사업거래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전문직업용역제공이지만 독립적 신분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어 개별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등의 방법으로 과세절차가 이행되고 투명증빙의 문제가 예외로 적용되는 특별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다.

### 3. 시행규칙상 투명증빙 제외열거규정

다음 시행규칙은 포괄양수도, 방송용역, 전기통신용역, 공매·경매 또는 수용, 택시운송용역, 부동산임대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투명지출증빙입수·예외로 열거규정하고 있다.

#### 관련법령

##### ▲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3. 30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11. 2. 28 개정)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7. 3. 30 단서신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 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9.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9의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0. 3. 9 신설)
  - 9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0. 3. 9 신설)
  - 9의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2000. 3. 9 신설)
  - 9의5. 재화공급계약·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2000. 3. 9 신설)
  - 9의6.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005. 2. 28 신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2009. 3. 30 개정)
  -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2000. 3. 9 개정)
  -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3. 9 개정)
  -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2011. 2. 28 개정)
  - 마.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2002. 3. 30 신설)
  - 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2009. 3. 30 개정)
  - 사.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2004. 3. 5 신설)



- 아.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004. 3. 5 개정)  
11.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사용료 또는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2007. 3. 30 신설)

#### IV. 사업사간에 주고 받는 수입·지출·소득·구입· 판매 거래 관련 증빙의 교부·입수·보관· 제출방법과 주의사항 검토요점(Check list)

- ① 투명증빙 작성·교부·관리사항 개요
- ① 적용대상 : 모든 법인, 개인사업자(사업소득, 임대소득) ⊖ 비사업 개인은 해당 안됨.
- ② 주고 받을 투명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 외국신용카드 포함)
- ③ 투명증빙 아닌 것 : 영수증(구 간이영수증)과 금전등록기영수증(99년 1월부터 관련 거래액 매입세액공제도 불가능함.)
- ④ 증빙서류 입수 및 보관기간 : 5년(신고기한까지 감안하면 5년 3개월, 결손금 공제시 신고일 이후 1년간 보관)

#### ② 접대비관련 지출증빙의 요건

접대 건당 1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는 투명증빙 필수요건. 투명증빙없는 지출액은 건당 전액 손금불산입(1만원까지 차감하는 개념 아님), 기타사의 유출처리. 따라서 신용카드로 먹을 수 없는 곳은 아예 가지 말라는 뜻임.

#### ③ 접대비부인액 계산방법

접대비부인액은 다음 2가지 기준부인액 모두 각각 손금불산입(전체 접대비에서 ② 제외후 ① 제외)

- ① 1년 금액기준(연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수입매출(100억까지 0.2%,

500억까지 0.1%, 500억 초과 0.03%)

- ② 접대비 건당 1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는 투명증빙(신용카드·세금계산서·계산서) 아니면 손금불산입, 1만원까지는 불필요(대신에 신용카드 아닌 지출의 접대비명세서 제출은 불필요해짐)

#### ④ 경조사비의 투명증빙 여부에 대하여

접대비에 대해서는 지출원인에 대해 외부사업자인지와 비사업자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이 무조건 투명증빙구비가 요건임. 따라서 거래처 경조사비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투명증빙을 입수할 수 없는 상황인바, 이러한 지출에 대해서까지 투명증빙을 입수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현실적 문제임. 법인세법 제25조 해석으로 볼 때 거래처 경조금인 경우 접대비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투명증빙없으니까 일단 손금부인될 수밖에 없음. 그러나 거래처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지출될 수밖에 없는 경비인데, 그렇다고 외부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투명증빙은 불가능한 현실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및 기타 예규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지나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접대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바,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20만원까지는 법적증빙수취의무없이 청첩장 등이면 됨(기업입장에서는 거래처 경조사비를 20만원까지(20만원 이하)로 지출할 수밖에 없음). 또는 임원상여금으로 지급하면 근로소득공제 5% 공제받을 수 있음(근로소득 과세표준 금액 4,500만원 이상에 대해 5% 계속 적용).

#### ⑤ 일반경비: 업무비의 지출과 관련증빙 입수방법

- ① 일반지출(모든 구매·원가·비용·외부지출) 지출 건당 3만원 초과는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있어야 하며, 없어도 손금인정은 되지만 투명지출증빙 미비금액×2%의 가산세 부과 (모든 일반경비에 적격증빙없어도 손금인정되지만 증빙불비에 따른 손금부인·과관비용 등의 세무상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대상임)
- ② 건당 3만원 이하의 일반지출비용은 적격지출증빙없이 일반영수증으로도 거래사실이 있다면 손금산입되며,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음.
- ③ 적격증빙이 원칙적으로 불필요한 거래
- 거래 건당 3만원 이하, 법인 아닌 농어민에게서의 직접구입

-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수입자로부터 공급(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된 것만임)
- ④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직불카드와 외국신용카드포함(금전등록기 영수증은 해당안됨)

⑥ 적격지출증빙없는 접대비 손금불산입만 적용하며 가산세 2%와 중복적용이 안됨

투명증빙없어서 접대비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접대비 손비부인으로 법인세 22%를 추가 납부하게 되므로 적격증빙 불비관련 가산세(공급가액×2%)는 적용되지 않음(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제4항 : 이종의 불이익은 없음) → 결손이 많은 기업은 접대비 부인되어도 법인세 낼 것이 없으므로 일반지출 적격증빙 불비금액×2%의 가산세(직접 현금부담)보다 접대비 증빙불비의 손금불산입(나중에 이익내야 세금부담)이 유리할 수도 있음. 그러나 이익이 예상된다면 손금불산입×22%의 법인세가 가산세 2%보다 10배 이상 부담임.

⑦ 적격증빙없는 일반지출 중 가산세 적용문제가 없는 경우

일반지출 중 투명증빙이 입수되지 않아도 기업의 가산세적용이 되지 않고 손금산입 등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산세는 2천년부터임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 일반적으로 적격증빙이 입수되어야 할 상대방공급자 : 모든 법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 부동산소득·사업소득 있는 개인사업자(상대방은 사업자임)
- 공급상대방 차원에서 적격증빙 면제상대방 : ①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비수익·비영리법인)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③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보험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④ 국내사업장없는 외국법인 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⑥ 읍·면 지역소재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즉 읍·면지역소재⊕간이과세자⊕신용카드가맹점 아닌 자 면제됨)－읍·면지역이 아니거나 간이과세자 등이 아니거나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건당 3만원 초과에 대해 적격증빙 입수 안한 경우 지출한 법인·개인사업자의 지출금액×2%의 가산세 적용됨)
- 기타 적격증빙이 면제되는 거래
- ①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한 총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문제없음. 그러나 3만원 초과이면 전액에 대해 2% 가산세부과 (즉 3만원까지는 가산세 부과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3만원 초과 되면 3만원까지 포함된 전액에 가산세 부과됨)

- ② 농어민 개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금액(농작물 생산업, 축산업, 복합농업, 임업, 어업종사 개인 및 개인사업자임)－그러나 법인은 제외, 농업유통업 개인도 제외, 즉 투명지출증빙입수해야 하는 상대방임.
- ③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에게서 용역공급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된 경우만 문제없음[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소득자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의료보건의용역(의사 등 약사, 수의사, 장의용역 등), 개인의 저술 등 문화·연예·건축감독 등, 음악 등, 직업운동가 등, 보험모집 등, 저작권 사용료, 강연료·교정료 등, 법인·개인의 국선번호,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용역 등－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에 열거된 부가세 면세용역만임].
- ④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시행규칙 제79조)

#### ⑧ 적격증빙면제 상대방이 아닌 경우의 관련증빙 입수문제

상기에서 열거된 범위가 아닌데도 건당 3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적격지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지출자·구입자 입장에서 거래금액×2%의 가산세를 2000년부터는 일방적으로 부과당함. 따라서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발행불능 상황(간이과세자)에 대해 공급받는 자, 지출자가 형편을 봐 줄 수 있는 입장 아님.

#### ⑨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아닌 소득세·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는 문제없는가, 무엇을 작성해야 하나

- 지출자·공급받는 자 차원에서 지출금액×2%의 가산세를 부과받으므로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지출자가 거래를 회피하거나 꺼릴 수 있는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더라도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투명증빙으로 보아 지출자의 2%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는지? → 공급자가 간이과세자 등이라도 자신의 거래처가 지출금액

×2%의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나오는 대채안이다.

극단적으로 연매출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을 작성할 수밖에 없고 세금계산서 작성은 불가능(부가가치세법 제25조와 시행령 제79조의2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하므로 신용카드가맹이나 현금영수증가맹이 되지 않은 경우 거래상대방인 지출자는 지출액×2%의 가산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 거래를 꺼릴 것이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세금계산서 작성이 불가능하다면 법인세법 제121조의 계산서 혹은 소득세법 제163조의 계산서 작성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뿐 아니라 계산서라도 적격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니까 거래상대방 입장에서 지출금액×2%의 가산세부담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언뜻 맞는 해석같아 보인다.

그러나 법인세법(제121조)과 소득세법(제163조)은 모두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재화·용역공급에 대한 거래증빙으로서 계산서·영수증을 작성·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급거래의 증빙에 대한 포괄적 규정이다. 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건 과세되지 않건 아니면 일반거래이건간에 거래가 있다면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는 것이다. 법인세법 제121조제4항과 소득세법 제163조제4항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작성·교부한 경우는 계산서 등 작성·교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로 미루어 볼 때 계산서 등 작성·교부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대해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특별법인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따라서 과세재화·용역에 대해서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간이과세자는 부가치세법상의 영수증(법인세법상의 영수증 등과 같음) 등만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가 구입해준 거래상대방의 지출금액×2% 가산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법인세법·소득세법상의 계산서(일반적으로는 부가세 면세사업자만이 작성·교부하는 것임)를 교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정 거래상대방의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신용카드가맹사업자나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라도 되어야 하며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간이과세자 등 세무

등록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거래처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이래저래 과표가 양성화되고 거래자료가 노출되는 투명경영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또한 유념할 것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을 무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더라도 이는 정식세금계산서가 될 수 없으므로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또한 법을 위반한 증빙교부이므로 지출금액×2%의 가산세부과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니까 간이과세자 등이 억지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해도 이는 의미 없는 것이며 영수증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물론 부가가치세법 과세사업자는 계산서(일종의 면세사업자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도 없고 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나 영수증(간이과세자 등)만을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가 아닌 면세거래인 경우는 직전연도 매출액 일정기준 이하 등이라도 정식 계산서(면세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도 있고 영수증을 작성·교부할 수도 있다(특히 열거한 경우 이외에는 정식 계산서 작성·교부가 원칙임).

⑩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영수증 작성교부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32조, 시행령 제79조의2)

- ①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경우 : 모든 일반과세자(법인·개인), 일반과세로 전환된 전문자격사업자(일반과세자)
- ②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로서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미용·이발업, 여객운송업, 입장권발행 영위사업, 전문 자격사직업자(99년부터 과세전환)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영수증 교부가능, 최종소비자에 공급하는 사업자(도정업, 양복점, 주택건설, 운수업, 부동산중개업, 사회서비스,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 일반소비자·수요자에게 전기통신용역공급 등)
- ③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요구하면 세금계산서 작성·교부해야 하는 일반사업자
  - 소매업자·음식점업·숙박업·여객운송업(전세), 전문자격사직업자로 일반과세자, 최종소비자에 대한 공급자

- ④ 간이과세자(직전1년 매출액 4,500만원 미달 개인사업자-부가세법시행령 제 74조제2항)가 될 수 없는 자 : 광업, 제조업(최종소비자·공급 : 과자·양장점 등 간이과세자 가능), 도매업자, 부동산매매업 : 나머지 사업은 직전년 1년 총 매출액(공급대가 포함 4,500만원 미만)인 경우만 간이과세 가능
- ⑪ 소득세법(혹은 법인세법이 위임)상 계산서·영수증 작성교부(소득세법 제163조 및 시행령 제211조) - 면세사업자
- 원칙적으로 계산서 교부해야 함(세금계산서와 형식은 동일하며 부가가치세액 기재란만 없음).
  - 소규모사업자 등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도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교부를 원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소매업자, 사업자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용역 공급사업자[금융보험업자,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사회·개인서비스업, 가사관련 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 교부사업(즉 간이과세자·전문 면허증 간이과세사업과 소매업자 등)].
  - 계산서·영수증 완전면제자-노점상인, 행상, 무인판매기 등, 시내버스용역,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외국인과의 거래, 부가가치세법상 면제자(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택시운송, 소매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국제거래 등⊕시행령 제79조의2제4항 비슷함)
  - 계산서·세금계산서 작성교부의무 면제자인 경우도 지출자에게 지출금액×2%의 가산세 예외는 적용되지 않음(거래가 격감할 것임).

## V. 적격지출증빙서류 수취제도 개요

### ① 지출증빙서류를 제대로 받도록 하는 이유

각 납세자의 모든 원가 비용 손실 등의 투명성 확보와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출 거래금액 및 소득과세표준의 양성화 → 지출자 구입자의 비용신뢰성 매출자의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자료노출과 법인이익 개인사업자의 소득자료 노출 등

## ② 지출증빙서류가 꼭 필요한 거래

외부의 적법등록한 사업자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만임(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공급받는 거래에 한함) ↔ 따라서 비사업적인 재화·용역공급 일방적 지출 등의 경우는 지출증빙서류가 아니고 일반영수증만 있어도 회사의 비용인정 가능함(예를 들어 비사업 일반개인으로 부터의 비품, 차량구입, 개인의 근로제공, 일용근로소득지급, 특정조직, 단체에 대한 대가성 아닌 일방적 징수, 회비 등).

## ③ 적격지출증빙서류의 종류, 의미, 효과 등 분석

① 세금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포함) :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사업자의 재화·용역거래시 작성교부(매출자 매입자가 각 과세기간별로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므로 거래기록이 국세청전산망 입력되어 상호 자동 검증됨).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작성교부할 수 없으며, 작성교부했어도 이는 영수증에 불과하며 지출증빙으로 인정안됨.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 지출증빙으로 인정됨.

② 계산서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 재화·용역거래시 작성교부(모든 면세사업자는 연간 규모나 회사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서 작성 교부할 수 있음. 매출자 매입자가 1년 단위로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므로 거래기록이 상호검증됨).

③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 재화·용역공급자가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등 교부하는 대신에 작성교부함(재화·용역공급대가가 구매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회사를 통해 공급자에게 거래은행 계좌로 입금되므로, 매출자 재화·용역공급자의 매출거래액이 자료가 모두 노출되어 부가세과세표준 총 매출액 또는 소득금액과세표준양성화가능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말하며, 직불카드 외국발행신용카드도 가능하며 백화점 카드도 가능함.

## ④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관련세법상 요건과 불이익 내용

가. 투명지출증빙이 꼭 입수되어야 하는 거래 :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로서 일



정규모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재화·용역거래로서 법인세법 제116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거래 → 투명지출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를 꼭 입수·비치할 것. 없으면 해당거래금액×2%의 가산세를 2001년 1월 1일부터의 거래에 대해서 법인세신고납부금액에 가산하여 납부함.

- 나. 투명지출증빙을 입수할 필요없는 거래 : ㉠에 열거된 거래가 아니면 투명증빙을 꼭 입수하지 않아도 별도의 법적불이익은 없음(영수증이나 기타 대체증빙, 지출의 객관적 사실입증서류가 있다면 사업자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거래금액×2%의 가산세부과 등 불이익 없음).
- 다. 지출증빙서류 입수대상거래이지만 입수안했거나 상대방의 사정으로 입수 불가능한 경우 현실적 처리
  - ① 구입자 지출자가 해당거래금액×2%의 가산세 부담(해당거래의 사실있으면 세무상 비용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 그러나 접대비라면 증빙불비 이유로 기밀비로 분류되므로 접대비 손금불산입 해당됨).
  - ② 2% 가산세가 부담스러우면 상대방에 거래대가 지급시 2%(가산세)를 차감한 98%만 지급
  - ③ 따라서 지출증빙서류를 작성 교부해주지 않는 거래상대방(주로 간이과세자 등)과는 거래를 하지 않음이 가장 현명함.
  - ④ 그래도 거래가 불가피하면 상대방에게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전환을 유도함(현실적으로 연매출 4800만원 이하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됨).

## VI. 적격지출증빙서류의 입수 수취여부판단

(시행령 제15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

- ① 공급주체판단 : 재화·용역공급하는 상대방 (시행령 제158조제1항)
- ① 모든 법인 : 모든 법인은 계산서작성 교부의무가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모두 일반과세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작성교부의무 있음(일반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 법인격 있지만 지출증빙서류 입수 불필요(상대방은 교부불필요) 상대방—수익사업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보험업영위법인(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 ②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사업상 독립적 재화·용역공급자임:일반과세사업자임)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이지만 신용카드가맹사업자
  - 지출증빙서류 입수불필요상대방 : 읍·면지역의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
- ③ 소득세법상 능동적 사업자(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있는 거주자 등) : 일반적 사업자(비거주자라도 국내선박 등 임대소득 있는 경우 해당)
  - 지출증빙서류입수 불필요 상대방 : 국내사업장 없는 개인(비거주자),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사업자 아닌 경우만임.

**관련법령**

●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동법 제119조제3호·제5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② 공급거래객체 판단

일정규모 미만, 농어민, 대체적 과세수단적용거래 등은 지출증빙 제외

- ① 지출증빙입수 해당 : 건당 3만원 초과 거래, 원천징수대상 아닌 지출
- ② 지출증빙 입수불필요거래(시행령 제158조제2항)

재화 · 용역공급받은 가액 거래지출 건당 3만원 이하, 농어민의 재화 용역 직접공급,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으로부터 받은 용역으로서 원천징수한 소득지급거래

**관련법령**

●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009. 2. 4 개정)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2006. 2. 9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005. 2. 19 신설)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8. 2. 29 개정)

▲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3. 30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11. 2. 28 개정)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7. 3. 30 단서신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 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9.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9의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0. 3. 9 신설)
  - 9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0. 3. 9 신설)
  - 9의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2000. 3. 9 신설)
  - 9의5. 재화공급계약·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2000. 3. 9 신설)
  - 9의6.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005. 2. 28 신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2009. 3. 30 개정)
  -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2000. 3. 9 개정)
  -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3. 9 개정)
  -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2011. 2. 28 개정)
  - 마.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2002. 3. 30 신설)
  - 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2009. 3. 30 개정)
  - 사.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2004. 3. 5 신설)

- 아.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004. 3. 5 개정)  
 11.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사용료 또는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2007. 3. 30 신설)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고시 (국세청고시 제1999-43호, 1999. 12. 10)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제9호마목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제10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인정되는 거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다 음 -

거래대금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붙임의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거래

1. 인터넷, 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3. 국세청 고시에 의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등을 구입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제3호의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을 제공받거나 제6호의 부동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부 칙

적용례 : 이 고시는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Ⅶ. 기업의 각 구매지출계정이나 거래상왕별 지출증빙서류 종류

- ① 매출수입, 수익, 입금분야
- ① 기업의 매출액 : 세금계산서작성교부, 면세매출은 계산서 작성교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대신에 신용카드가맹회사나 현금영수증가맹회사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교부가능(매출전표에 공급가격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구분기재하며, 공급받는 자를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는 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 적용가능함)

- ② 공급대가 수금지연의 연체이자 등 : 재화·용역공급과세표준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불필요, 이자소득 아니고, 영수증 혹은 입금표만 작성해주고 회사의 기타매출수입에 반영함.
- ③ 매입할인받은 입금액 혹은 외상매입금감액금액 : 재화·용역공급대가 아니며, 해당차액 입금액에 대해 입금표 영수증만 작성 교부함(상대방은 매출차감항목, 매입자는 매입차감항목임).
- ④ 보상금·배상액 : 재화·용역공급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안하고 입금표·영수증 등만 교부함.
- ⑤ 일방적 징수금, 재화·용역공급대가 아닌 특별입금 :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안함.
- ⑥ 부동산매각 등 : 건물부분이나 기계장치 등은 세금계산서 작성 교부하며, 토지부분은 작성제외(계산서 작성 교부하면 됨)

## ② 매입·구입·지출·비용·원가분야

- ① 매입·매출원가·원부자재 등 : 대부분 국내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재화·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 받음.
- ② 매출할인해준 지출액, 외상매출금 감액 등 : 재화·용역공급대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안하며, 별도의 이자소득 아니므로 이자소득 원천징수절차 불필요함.
- ③ 급여지급 : 사업상 독립된 용역공급아니므로 지출증빙 불필요, 근로소득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작성, 일용근로소득지급의 경우도 독립된 용역공급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 불필요(내근직원급여, 임원급여, 사외이사급여, 고문 촉탁의 급여 등)

## ④ 외주용역비 지급

- 독립된 재화·용역공급받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 필요
-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개인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열거용역 중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지급시 원천징수한 경우는 원천징수지급명세서 등이 있으므로 별도의 지출증빙은 필요없음(의사 등의 의료보건의용역, 저술, 강연, 연예, 건축감독, 학술용역, 직업운동, 보험모집수당, 금융기관장려수당, 집금수당, 서적음반의 판매실적수당, 저작권사용료, 출연금

등, 개인국선번호, 학술·기술연구용역 등, 개인전자계산시스템분석프로그램 개발용역 등 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열거소득) → 이들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사업자등록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 등 교부받을 필요없이 총 소득 지급액×3%(주민세 포함 3.3%)의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함.

- 독립된 재화·용역공급받는 경우로서 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받음.
- 독립된 재화·용역공급받는 경우로서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영수증 교부받으나 이 경우는 지출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임(거래건당 5만원 초과인 경우 공급받은 가액×2% 가산세 부담).
- 상대방이 부가세법상 개인면세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원천징수 적용되며, 면세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3.3%)가 적용될 수 없음.
- 용역을 제공한 상대방이 과세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안된 경우 : 일시적 용역제공이면 사업자로서 용역제공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불가능하나, 거래건당 3만원 초과이면 지출증빙불비가산세문제 있음(상대방의 경우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적용될 수 있음). 계속적 용역제공이면 당연히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 작성교부해야 하며, 건당 3만원 초과에 대해 당연히 2% 가산세 적용됨.

⑤ 임직원식사대·복리후생비·식당운영대금지급

- 현금·현물지급시 1인당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소득임(10만원까지는 사업상 재화·용역공급이 아니므로 지출증빙 필요성 없음).
- 매월 10만원 초과액의 경우도 임직원 개인근로소득과세로 연말정산 합산하는 경우는 지출증빙 입수 필요성 없다고 판단됨.
- 그러나 회사가 별도로 독립외부조직에 식비지급시 건당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지출증빙서류 입수하여야 하며, 입수하지 않으면 지출액×2%의 가산세 부담함(구내식당이 회사자체예산 아니고 외부사업자 개념이면 회사의 식비지출관련 식당운영주체를 사업자등록하도록 하며, 지출증빙입수가 필수적인바, 건당 3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출증빙의무 없음. 매일 식비가 3만원 이하이라도 주단위, 월단위 합계 지급개념이면 지급단위로 합계한 금액이 공급대가로서 지출증빙의무 있음 → 따라서 가능한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시킴이 가장 현명함).

- 회사의 자체 구내식당 운영하면서 관련 음식자재비 지출 등 : 외부로부터 음식자재 재화증빙받음에 대해 지출증빙계산서 입수하여야 함.
  - 건설공사현장에서의 현장건설인력의 식비지급 : 각 식당에서 거래단위 건당 3만원 초과 식비지출에 대해 지출증빙있어야 하며, 없으면 지출증빙불비가산세 부과됨(신용카드가맹 음식점 활용하거나, 음식비지출액×2%의 가산세 부담을 감안해야 함. 혹은 건당 3만원 이하으로 구분기록 지출하여야 하는바, 3만원 초과 초과 지출건 금액을 의도적으로 3만원 이하로 잘게 쪼개는 것이 해결책은 아님)
- ⑥ 부가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타목의 개인성과부당(단독, 사업장 없음)인 경우 세금계산서 없이 사업소득으로 하고 3.3% 원천징수만으로 투명증빙 인정됨.
- ⑦ 회사재화관련 운송비·운전사 용역대가지급
- 종전에 회사정규운전사 월급⊕회사명의차량의 감가상각비 등⊕관련유지비로 전액 회사정규비용처리하였으나, 이를 외주화하면서 운송용역비 지급으로 하는 경우 해당비용 지출시 세금계산서 등이 입수되어야 하며, 없으면 지급액×2%의 가산세 부담됨.
  - 예를 들어 운전사급여 매월 150만원⊕감가상각비 월 50만원 운영비⊕월 100만원하여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거래인 경우 운전용역제공 상대방은 연매출 3600만원(=300만원×12개월)으로 간이과세자라 하여도 지출하는 회사는 건당 3만원 초과가 되므로 지출증빙 있어야 함(지출증빙 없다면 지출액×2%의 가산세 부담) → 따라서 운전용역제공 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거나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해야 함. 사업자등록을 꺼리는 경우 지출증빙 없는 거래가 되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없고 또한 증빙없이 손금불산입문제도 있음. 따라서 대체안으로 선택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사)목의 판매실적 관련 사업소득으로 보아 3.3% 원천징수하는 절차를 취할 수도 있으나 적법한 방법은 아님(운송용역은 부가세과세용역이므로 면세거래의 사업소득으로 분류할 수 없음).